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변경〉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08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순 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05. 01.
3. 회부연월일 : 2025. 05. 0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각 지방에 설치하는 특별행정기관의 명칭을 “지방행정기관”에서 “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3조(특별지역행정기관의 설치) ① -----<br>-----<br>-----<br>-----<br>---지역행정기관-----.                  |
|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② -----지역행정기관-----<br>-----<br>-----<br>-----<br>-----<br>-----<br>-----<br>-----<br>--.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지방에 둘 수 있는 특별행정기관<sup>1)</sup>의 명칭을 “지방행정기관”이라고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행정기관”이라는 명칭 중 “지방”이라는 용어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위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어 해당 행정기관을 자발적 역량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sup>2)</sup>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보다 독자적·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지역’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제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반면,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헌법」<sup>3)</sup>과 「지방자치법」 등

---

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이 ‘지방’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6, 2025.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1, 2025.5.1.)이 제출되었는바, 소관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수 법률에서 ‘중앙’과 대칭되어 사용되거나 수도권 이외의 영역을 지칭<sup>4)</sup>하는 등 본래 사전적 정의<sup>5)</sup>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작은 단위의 영역을 지칭<sup>6)</sup>하는 경우 지방과 지역이 구분 사용되며, ‘접경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특정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함.

이에 더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지역별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때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sup>7)</sup>이라는 점에서, 지방이라는 용어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일부 관련 법률에서만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지방’과 ‘지역’의 용례를 정하여 일괄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지방’의 사전적 정의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용어이고, ‘지역’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일컫는 말임(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6)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이라는 용어는 ‘중앙’에 상대되는 용어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지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국가 법률 체계의 통일성 유지, 용어 변경에 따른 혼선 발생 및 명칭 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339 |